

대통령령 제 16445 호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중개정(안)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항”으로 한다.

제4조 제2호중 “660제곱미터”를 “1천제곱미터”로 한다.

제5조 및 제 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설계대상인 공사의 범위)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업자에게 설계를 발주하여야 하는 공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 공사로 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

2. 천재·지변 또는 비상재해로 인한 긴급복구공사 및 그 부대공사

3.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통신구설비공사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인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계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공사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다. 기타 정보통신관련 정부투지기관·정부출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으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외의 공사로서 총공사금액(도급금액에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비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억원 미만인 공사

제7조(감리대상인 공사의 범위)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업자에게 감리를 발주하여야 하는 공사는 제5조 항제1항 각호의 공사 및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 공사로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

2. 철도, 도시철도, 도로, 방송, 항만, 항공, 송유관, 가스관, 상·하수도 설비의 정보제어 등 안전·재해예방 및 운용·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

3. 6층 미만이거나 연면적 6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4. 기타 공중의 통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로서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자격이 있는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감리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본문중 “배치하되,”를 “배치하되, 당해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로 하고, 동항제1호중 “도급금액 55억원이상”을 “총공사금액 70억원 이상”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도급금액 15억원이상 55억원미만”을 “총공사금액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도급금액 5억원이상 15억원이상 15억원미만”을 “총공사금액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도급금액 5억원미만”을 “총공사금액 5억원 미만”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도급금액이 5천만원미만”을 “총공사금액이 2억원 미만”으로, “시(특별시 · 광역시를 제외한다) · 군 · 자치구”를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 군”으로 한다.

제10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확인

제3장제1절의 제목중 “허가”를 “등록”으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의 제목중 “허가”를 “등록”으로 하고, 동조중 “허가를 받고자”를 “등록을 하고자”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공사업허가대장)”을 “(공사업등록대장)”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허가를 한 때에는 공사업허가 대장”을 “등록을 한 때에는 공사업등록대장”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공사업허가대장”을 “공사업등록대장”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허가기준)”을 “(등록기준)”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허가기준”을 “등록기준”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중 “인가”를 “신고”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법인합병인가를 받고자”를 “법인합병신고를 하고자”로, “인가신청서”를 “신고서”로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제2호중 “허가기준”을 각각 “등록기준”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3항”으로, “법인합병인가신청”을 “법인합병신고”로 한다.

제1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표자

제19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통신구설비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제20조를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공사의 도금 및 하도급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정보통신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말한다)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의 평가방법은 별표 6과 같다.

제21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사업자인 법인의 공사업전담부서를 별개의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그가 영위하는 공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제21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된 시공능력은 그 평가일부터 1년이내의 기간동안 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을 말한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시공능력을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기재하여 교부한다.

제22조제1항중 “법 제3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의 범위는 도급받은 공사”를 “법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범위는 수급 또는 하수급은 공사”로 한다.

제24조제2항제2호중 “3천만원”을 “4천만원”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1호중 “시(특별시 · 광역시를 제외한다) · 군 · 자치구”를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 군”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제1호 단서”를 “제1항제1호”로 한다.

①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저하는 공사”라 함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구내통신선로 · 이동통신구내선로 및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의 설비공사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외의 공사를 말한다.

1. 감리를 실시한 공사

2.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제27조의 제목 및 제1항중 “정보통신기술자”를 각각 ‘정보통신기술인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정보통신기술자에 대한 교육은 인정교육과 향상교육으로 구분하며, 그 실시기준”을 “정보통신기술인력에 대한 인정교육의 실시기준”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정보통신기술자가”를 정보통신기술인력이”로,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경력수첩 또는 감리원자격증”으로 하고, 동조제4항 전단중 “정보통신기술자가”를 “정보통신기술인력이”로 하며, 동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30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32조 내지 제3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5조의 제목 “(보증대상)”을 “(보증범위)”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법 제4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보증범위는”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7조 내지 제3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1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6장(제42조 내지 제54조)을 삭제한다.

제55조제1항중 “법 제65조제1호 내지 제5호”를 “법 제65조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5호”로 한다.

제56조를 삭제한다.

제58조제1항제1호중 “허가”를 “등록”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허가증 · 허가수첩”을 “등록증 및 등록수첩”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인가”를 “신고의 수리”로 하고, 동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항제6호중 “법 제21조제2항 및 법 제23조제2항”을 “법 제23조제2항”으로 하고, 동항제7호를 삭제하며, 동항제8호중 “사용전검사”를 사용전검사(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검사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항제9호를 삭제하며, 동항제11호 및 제13호중 “허가”를 각각 “등록”으로 하고, 동항제14호중 “법 제73조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8호”를 “법 제73조제1호 내지 제5호”로 하며, 동항제17호중 “공사업허가대정”을 “공사업등록대장”으로 하고, 동항제18호를 삭제한다.

제5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검사에 관한 권한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권한을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장에게 위임한다.

1. 단독주택 및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공사
2. 지상 5층 이하이거나 연면적 3천300제곱미터 미만의 업무용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③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협회에 위탁한다. 이 경우 수탁대상 협회의 업무처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되,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접수
2.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종합관리, 시공능력평가, 정보의 제공 및 공사실적 등의 신고접수
3.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인정교육에 관한업무
4.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자의 신고접수 및 경력수첩의 발급·관리
5.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이수사항의 기록

제59조중 “공사업허가”를 “공사업등록”으로 한다.

별표 1내지 별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별표 5 내지 별표 8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감리원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체결된 감리용역계약에 의하여 배치되는 감리원에 관하여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기존공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2등급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④(이미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58조제2항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는 제58조제3조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